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268

제안연월일: 2024. 8.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000000	기미구시시	000460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200905	강민국의원	2024.6.25.	(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2201004	김용만의원	2024.6.26.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 회부
2001560		0004710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회부
2201562	이강일의원	2024.7.10.	(2024.8.26.)

- 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6.)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3.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 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비율을 다르게 한다.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

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 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 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 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 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 ⑦ (생 략)

부개정법률 부칙

②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 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 워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 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 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 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 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삭<u>제></u>

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 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 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 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法律 第5492號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 律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